금융위원회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7. 9.(수) 11:30 배포 2025. 7. 9.(수) 09:00

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, 엄정제재하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.

- 불공정거래 "**원스트라이크 아웃**(One Strike Out)"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 합동 **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」** 발표

< 주요내용 >

-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 「**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**」 설치
- 거래소 감시체계 "**개인 기반**"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**AI 적용**
- 지급정지, 과징금, 금투상품 거래·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**행정제재 적극 활용**
- **상장폐지 제도개선**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

'25.7.9일(수)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와 함께 「**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**」을 발표하였습니다. 그간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**초동대응**을 **강화**하고 **엄정히 처벌**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*하였고,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* 거래소 현장간담회(6.11일) 이후 한 달간 총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 개최

[「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」 주요내용]

첫째, 「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」을 설치하겠습니다.

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**심리**(거래소), **조사**(금융위·원)기능이 **각 기관에 분산**되어 있고, 기관간 **권한 차이***가 있어 긴급·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에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는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·조사의 **효율성을 향상**시킬 수 있도록 「**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**」을 설치할 예정입니다.

* 계좌조회 권한 : (금융위·금감원) 증권·은행계좌 가능 / (거래소) 증권계좌만 가능
조사 권한 : (금융위) 강제·임의조사 가능 / (금감원) 임의조사만 가능

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**초동대응기능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'**거래소**'에 설치되는 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간 **유기적 협업체계**입니다.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**긴급·중요사건**을 **초기부터 함께 조사**할 계획입니다. 각 기관의 모든 심리·조사권한,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❶**전력자**, ❷**대주주·경영진 관련**, ❸**SNS·허위보도 악용 사건**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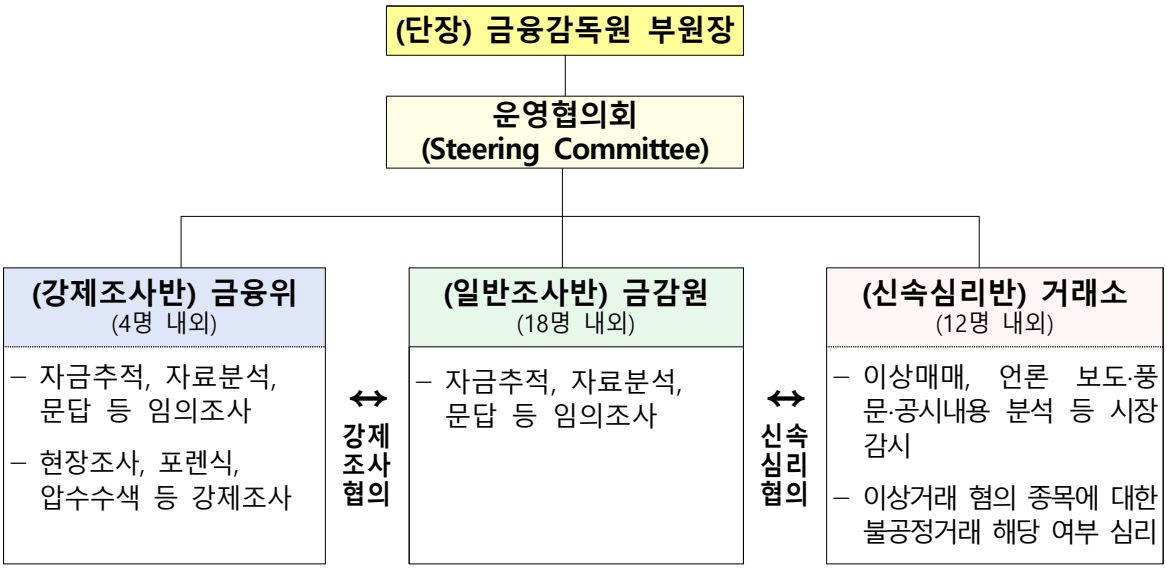

※ 합동대응단의 세부 운영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

둘째,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"계좌기반"에서 "개인기반"으로 전환하고,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.

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**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**를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런 "계좌기반" 감시는 **감시 대상이 과다**하고 **동일인 연계성 파악**이 **어렵**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**가명정보**(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)를 **계좌와 연계***하여 "**개인기반**"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, 시장감시시스템을 **개선할 예정**입니다.

*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 → 이를 2차 변환(암호화)한 후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적출·분석

감시시스템을 “개인기반”으로 전환함에 따라 **감시·분석대상이 크게 감소***(약 39%)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됩니다.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**동일인 특정** 및 **시세관여율**(행위자의 의도), **자전거래 여부** 등도 더 쉽고,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’24년 감시대상 계좌 수는 2,317만개, 주식 소유자 수는 1,423만명
↳ 계좌기반 감시체계 대비 감시 대상이 39% 감소되고, 탐지 정확성은 제고

【 효과 : 개인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·정밀 감시 】

이에 더해 시장감시시스템에 **AI 기술을 적용**하는 등 **시스템 고도화**를 추진하겠습니다.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**혐의성 판단 지표**를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최근 **지능화**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**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**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.

셋째,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(One Strike Out) 하겠습니다.

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**지급정지**, **과징금**, **금융투자상품 거래** 및 **임원선임·재임 제한명령**이 도입*되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**신규 행정제재**를 **적극적**으로 **활용**할 계획입니다.

* (과징금) ’24.1월 시행 / (지급정지, 거래·임원선임 제한) ’25.4월 시행

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**조사 단계**에 **발견**된 경우, **신속히 지급정지 절차**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**이익**을 **동결**하고 **시장 피해**를 **최소화**하겠습니다.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**과징금**(최대 부당이득의 2배)을 부과하여 **범죄수익**을 **환수**하고 **불공정거래 유인**을 **제거**하겠습니다. **중대 불공정거래 행위**에 연루된 **대주주·경영진** 등의 경우 **적극적**으로 **대외 공표**하여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,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, **불공정거래**와 **연계**되는 등 **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**에는 **최고 수준**(공매도 주문금액의 100%)의 **과징금 부과**와 함께, **영업정지** 등 기관제재와 **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** 등을 활용하여 **엄단**해 나가겠습니다.

넷째,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키겠습니다.

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**성장과 신뢰를 저해**할 뿐만 아니라, **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**될 우려도 있습니다. **상장유지 요건**은 강화하고 **상장폐지 절차**는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**적시 퇴출**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
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**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**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**단계적 상향조정**합니다. 또한 기존에는 **감사의견 미달**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, **2년 연속** 감사의견 미달시 **바로 상장폐지** 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. 상장폐지 **심사절차** 효율화를 위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**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**를 **2심제**로 축소합니다. 이러한 제도개선은 금일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**금융위원회 승인의결**을 통해 즉시(7.10일) 시행될 예정입니다.

[향후 계획]

금융위·금감원·거래소는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」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**조기에 적발**하고, 무관용 원칙의 **엄정한 처벌**을 통해 자본시장 **불공정거래 행위**를 **척결**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.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, 시스템 고도화 등 **제반 후속조치**를 **조속히 이행**하여 **실효적인 대응체계**를 구축하고, 시장에 '**원스트라이크 아웃**'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**지속적**으로 **관리·감독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>

☞ 금융위원회
- 인터넷 :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'참여마당 → 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
☞ 금융감독원
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'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증권불공정거래신고' 메뉴 접속

☞ 한국거래소
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http://stockwatch.krx.co.kr)
- 전 화 : 1577-0088

※ [별첨1]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
[별첨2]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발표문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신상록	(02-2100-2600)
		담당자	사무관	최민혁	(02-2100-2606)
			사무관	이주현	(02-2100-2605)
			사무관	김하민	(02-2100-2579)
<불공정거래 제도, 공시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최치연	(02-2100-26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호	(02-2100-2688)
<공매도, 상장폐지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고영호	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은	(02-2100-2651)
			사무관	이용준	(02-2100-2644)
			사무관	안영비	(02-2100-2656)
<공동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	책임자	과 장	정현직	(02-2100-2601)
		담당자	사무관	김관범	(02-2100-2596)
<공동>	금융감독원 조사1국	책임자	국 장	권영발	(02-3145-5550)
		담당자	팀 장	김기복	(02-3145-5582)
<공동>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	책임자	국 장	조치형	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이윤길	(02-3145-8475)
<공동>	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	책임자	단 장	서현재	(02-3145-5630)
		담당자	팀 장	김구연	(02-3145-5636)
<공동>	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	책임자	부 장	김민교	(02-3774-9020)
		담당자	팀 장	황교형	(02-3774-927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